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 번	안 호
--------	--------

제출년월일 : 1993.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물가안정대책 총괄, 조정기능강화 및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 도모

□ 주요골자

○ 기 능

-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상, 하수도료,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 등)

○ 위원회 구성

- 대책위원회 : 15인이상 25인이하 (위원장 : 도지사)
 - 임기 : 2년(연임 가능)
 - 구성 : 충청북도의 물가관련국장, 청주지방검찰청경제담당검사,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물가관련기관·단체의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실무위원회 : 10인이내(위원장 : 부지사)
 - 구성 :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

○ 회 의

- 정기(분기 1 회) 및 수시 개최

□ 근거법령 : 없 음

□ 기타 참고자료 : 내무부 조례 준칙(별첨)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충청북도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③위원은 충청북도의 보사환경국장, 농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청주지방검찰청경제담당검사, 충북지방경찰청수사과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